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417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6063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3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11행의 '제58조의3'을 '제58조의3이 규정하는'으로 고친다.

○ 2면 15행의 '이 사건 건물을 제조업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를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7층까지 부분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로 고친다.

○ 2면 마지막 행의 '4. 피고의'를 '9. 원고의'로 고친다.

○ 4면 15행의 '제58조의3 제2항 등 규정이'를 '제58조의3이'로 고친다.

○ 5면 4행의 '제2항'을 제1항'으로, 5면 10행 및 17, 18행의 각 '제2항 제1호'를 '제1항 제2호'로 각 고친다.

○ 6면 아래에서 2행부터 7면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7층까지 부분을 임대업에 사용하더라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구청 세무과 소속의 공무원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위 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그럼에도 위 공무원은 취득세 등 경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공무원은 원고에게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 조건에 준하면 취득세 등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7층까지 부분에서 영위한 임대업이 '위탁가공업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을 제5 내지 15호증)에도 원고의 '창업일 당시 업종'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에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대업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향후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7층까지 부분에서 임대업을 영위할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3

(3) 더욱이 위 서류 중 하나인 '부동산이용계획서'(을 제7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의 이용계획에 관하여 'OEM 제조업 본사 사업장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을 예정된 용도인 '제조업 본사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4) 한편 원고가 201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금 융자대상 확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확인 신청'이라 한다)하면서 위 건물의 2층에서 7층까지 부분을 임대업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위 신청을 확인한 바 있기는 하다(갑 제7호증의 1, 2).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경감과는 근거법령과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신청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담당부서도 ○○구청의 세무과가 아닌 지역경제과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검토·확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경감과 관련된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9 내지 12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7층까지 부분을 임대업에 사용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가 추징사유로 정하는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3

의 취득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금을 대출받으면서 예정한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위 제1호가 추징예외사유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또한 ① 피고는 이 사건 확인 신청을 검토·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7층까지 부분을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 경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해 줄 수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 경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건물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피고는 그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준 점, ③ 이후 원고는 피고가 검토·확인해 준 목적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해 왔는데, 피고는 약 1년이 지나 돌연 경감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고지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감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가 경감된 취득세 등의 추징예외사유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위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3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로 하는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이상,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7층까지 부분을 제조업이 아닌 임대업에 사용한 것은 원고가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실질에 있어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도시재생기금을 대출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분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내부적으로 위 부분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제조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례의 원칙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경감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취득세 등의 경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위 건물의 취득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문언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할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함이 비교적 분명하고, 취득세 등의 경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안내되기도 하였는바,[1]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을 제조업이 아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3

임대업에 사용할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달리 원고가 이를 오인하였다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절차는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이 사용될 것을 전제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고, 이후 감면의 취지에 따라 당초 기재된 목적대로 부동산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 ④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감면신청 시 기재한 제조업의 용도로 위 건물이 사용될 것을 신뢰하고 이를 감면해 준 것이고, 이후 그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추징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감면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례의 원칙이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위 신청 당시 제출한 '부동산이용계획서'(을 제7호증)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을 제6호증)의 '유의사항'란에도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3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3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3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끝.